

의안
번호

455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4. 16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인순의원 외 13명

나. 의안번호 : 제455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4. 10.

2. 제안이유

-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용어를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4조)
- 라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과 실태조사 규정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마.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사업 규정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 규정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4. 3. ~ 2025. 4. 8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조례안은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3년마다 실시하는 ‘전국 보육실태조사¹⁾’에 의하면 보육교직원 30.1%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고,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보육교사 보호조치 시행(38.0%), 근무환경 개선(28.1%), 이용자(부모) 대상 보육교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(15.6%), 보육교사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(4.0%)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사됨
- 또한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이라 한다”) 제4조제4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1조(목적), 안 제2조(정의)

-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,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.

1)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(보건복지부 의뢰, 육아정책연구소 수행)

나.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, 안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
-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,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.

다. 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, 안 제6조(실태조사)

- 구청장은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해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일관된 정책이 되도록 규정함

라. 안 제8조(위원회의 설치·운영)

-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에 따른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정함

마. 안 제8조(지원사업), 안 제9조(협력체계 구축)

- 지원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, 권익보호 관련 교육,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, 법률상담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,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상위법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